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발의년월일 : 1992. 2. 20

발의자 : 고광택의원의 6인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중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현행 의원의 여비를 공무여행중에만 지급해오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함

3. 개정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4. 개 정 이 유

의원의 여비를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여행중에만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시에도 지급토록 추가규정코자 함.

5 예 산 상 황

기확보한 예산의 부족시 별도 조치없이 기편성된 의원부대비를 활용하여 충당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 (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

제5조제①항중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때 여비 지급 추가
- 판 련 조 항 : 제4조,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지급) 회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회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		